

대전광역시 중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44호

2021. 9. 10.(금)

차 례

고 시

-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 4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3차) 5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2차) 행정예고 6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변경) 행정예고 11

입 법 예 고

-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5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공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0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11건(부여 6건, 폐지 5건)

- 도로명주소(신규부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56번길 41-6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참조 ”			

- 도로명주소(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11-19외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지적과(☎042-606-6931~693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로부터 도로명주소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에 의거 주소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70-5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56번길 41-6	2009-07-14	도시의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의 기능 반영	건물신축
2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70-4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11-19	2010-02-26	유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2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신축
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2-10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22번길 73	2009-07-14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의 기능반영	건물신축
4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2-54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22번길 77	2009-07-14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의 기능반영	건물신축
5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79-2	대전광역시 중구 대중로286번길 3	2009-07-14	대전 남북을 연결하는 도시로 공간적 위상 고려	건물신축
6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92-6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69번길 53	2010-02-26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문창로로 명명	건물신축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70-5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55번길 41	2021-09-08	건축물철거
2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270-4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로 11-19	2021-09-08	건축물철거
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2-54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22번길 79	2021-09-08	건축물철거
4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79-2	대전광역시 중구 대중로 286	2021-09-08	건축물철거
5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79-2	대전광역시 중구 대중로 288	2021-09-08	건축물철거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1-93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허태정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 사정공원)	
소하천명		배나무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중구 무수동 413-1번지 일원		
	면적	25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9. ~ 2022. 6. 30. (일시점용허가)		
	목적 및 사유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공사(3단계) 추진에 따른 임시 우회도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광역시장·문화드림파크개발(주)로부터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9. 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사 업 명 :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3차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문화드림파크개발(주)
- 열람기간 : 2021. 9. 9. ~ 2021. 9. 23.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0), ☎ 042-606-6605
- 의견제출기간 : 2021. 9. 9. ~ 2021. 9. 2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6번지 총 39필지(46,021.83㎡)
 - 토지소유자 : 경진**주식회사(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294번길 **) 등 96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6번지 컨테이너 등 총 751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2차)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2차)

2. 설치목적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도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공고방법: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djunggu.go.kr>)

5. 공고기간: 2021년 9월 10일 ~ 2021년 9월 30일(20일간)

6. 설치장소

구분	설치장소	차량진행방향	제한속도	선정사유	비고
1	대전 중구 산성동 132-20번지 앞	머티4→문화초4	30km/h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문성초
2	대전 중구 산성동 144-12번지 앞	문화초4→머티4	30km/h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문성초
3	대전 중구 부사동 135-1 보운초등학교 입구 앞	중구 부사동 140-19 → 중구 부사동 99-1	30km/h	어린이보호구역	보운초
4	대전 중구 부사동 135-1 보운초등학교 입구 건너편(한밭운동장)	중구 부사동 99-1 → 중구 부사동 140-19	30km/h	어린이보호구역	보운초
5	대전 중구 목양초등학교 정문 앞	목양초3거리 → 목동초등학교	30km/h	어린이보호구역	목양초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의 신호 및 과속 위반 차량
- 촬영시간: 매일(24시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일: 2021년 9월 30일 까지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출처: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교통행정담당(TEL 042-606-6864)

- 팩스: 042-606-7929

- 우편: (우)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중구청 3별관 5층 교통과)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성명	
제출	주소	전화번호
인		

의견 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정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구분	시설명	위 치	유형	차량진행방향	수량
1	문성초등학교	대전 중구 산성동 132-20번지 앞	과속+신호 (30km/h)	머티4→문화초4	1
2		대전 중구 산성동 144-12번지 앞	과속+신호 (30km/h)	문화초4→머티4	1



구분	시설명	위 치	유형	차량진행방향	수량
3	보운초등학교	대전 중구 부사동 135-1 보운초등학교 입구 앞	과속 (30km)	부사동 140-19 → 부사동 99-1	1
4		대전 중구 부사동 135-1 보운초등학교 입구 건너편(한밭운동장)	과속 (30km)	부사동 99-1 → 부사동 140-19	1



구분	시설명	위 치	유형	차량진행방향	수량
5	목양초등학교	대전 중구 목양초등학교 정문 앞	과속+신호 (30km)	목양초3→목동초	1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변경)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 설치목적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공고방법: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djunggu.go.kr>)

5. 공고기간: 2021년 9월 10일 ~ 2021년 9월 30일(20일간)

6. 설치장소(변경)

구 분	설치장소	차량진행방향	제한 속도	선정사유	비 고
10	대전 중구 어덕마을로 47-6 합동자원 앞 횡단보도	당초 : 버드내4 → 보성4 변경 : 중촌육교 → 계룡육교	30km/h(과속+신호)	어린이보 호구역	목양초 (변경)
15	대전 중구 우암로 15 금강회관 앞	삼선교→대중로4	당초 : 50km/h(과속) 변경 : 50km/h(과속+신호)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선화초 (변경)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의 신호 및 과속 위반 차량
- 촬영시간: 매일(24시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일: 2021년 9월 30일 까지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출처: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교통행정담당(TEL 042-606-6864)
- 팩스: 042-606-7929
- 우편: (우)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중구청 3별관 5층 교통과)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성명	
제출	주소	전화번호
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 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정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상지별 세부내역(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유형	방향	수량
8	목양초등학교 /명설유치원	중구 어덕마을로 47-6 합동자원 앞 횡단보도	과속+신호 (30km/h)	당초 : 버드내4→보성4	1
				변경 : 중촌육교→계동육교	



구분	시설명	위치	유형	방향	수량
12	선화초등학교 /명설유치원	중구 우암로 15 금강회관 앞	당초 : 과속(50km/h) 변경 : 과속+신호(50km/h)	상선교→대종로4	1
		중구 대종로550번길 선화초교 후문 앞	과속+신호 (30km/h)	대종로→대전천	1
		중구 대종로550번길 선화초교 후문 건너편	과속+신호 (30km/h)	대전천→대종로	1
		중구 선화로 선화초교 정문 앞	과속+신호 (30km/h)	선화4→선화교	1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하도록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4.7.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2020.10.8.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중복조항 정비함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한 회의의 비공표 조항 삭제함(안 제10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지적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E-mail(kcr0728@korea.kr), 전화(042-606-6905)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과(042-606-69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마침.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10명이상”을 “10명 이상”으로, “고려한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업무 담당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 실, 과장(총무국장, 세무과장)”을 “실·과장(세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를 “부동산 가격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제25조 ----- ----- ----- ----- -----.</p>
<p>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u>위원장 1명</u>을 포함하여 <u>10명 이상 15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u>고려한다</u>.</p>	<p>제2조(구성) ① ----- ----- ----- <u>위원장 1명</u> <u>과 부위원장</u> ----- ----- <u>10명 이상</u> ----- -- <u>고려하여야 한다</u>.</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해당업무 담당국장</u>으로 한다.</p>	<p>② ----- ----- <u>총무국장</u>----- -----.</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구청장이</u> 위촉한다.</p>	<p>③ ----- ----- <u>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u> -----.</p>
<p>1. 업무관련 <u>국, 실, 과장(총무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u></p>	<p>1. ----- <u>실·과장(세무과장</u>----- ----- -----</p>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2. 부동산 가격공시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을 준용한다.

경우

5. 위원이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회
피하지 않은 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 제>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
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
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
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 전 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간사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소관업무 부서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제7조(회의) ① -----
----- 3일 전-----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원장, 부위원장-----
-----.

제9조(의견청취 등) -----

----- 듣거나-----
----- 요구할 -----
-----.

<삭 제>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
-----.

제12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
---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

-----.

【관 계 법 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4. 7.]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대		